

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종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(제3조제2항)에 따르면, 가로구역의 기준면적은 1만제곱미터가 원칙이지만,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만 구역면적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, 2020년 3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도록 한 소규모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 면적을 시행령이 정하는 최대 규모인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  
- 개정안은 가로구역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